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23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권명호·한무경·송언석

태영호 • 박덕흠 • 정운천

이철규 · 정희용 · 김성원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납세액 산정 및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을 감안하면 현행의 간이과세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이와 함께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 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면세 기준 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간이과세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와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장에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간이과세심의위원회) ① 간이과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간이과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간이과세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 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 자로 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69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 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u>7천만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의무의 면제)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u>3천만원</u> 미만이	<u>5천만원</u>
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	

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신 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70조의2(간이과세심의위원회)
- ① 간이과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간이과세심의위 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 한 사항
 -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의 면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간이과세에 관한 중 요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 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 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 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 자로 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법률 또

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 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